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보 행 안 전 및 편 의 증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연차별 국가 실행계획의 수립, 중앙·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구성,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21. 6. 23.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및 명칭 변경,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한 관련 조문 조정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내용·수립 절차(안 제3조 신설)

- 1)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 2) 기본계획 확정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명칭 등 변경(안 제4조 신설·통합)

- 1) 행안부장관이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
- 2)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현행 특별

시장 등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명칭(전체·약칭)을 지역계획으로 변경

3)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해 지역계획 관련 조문 통합

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신설)

1) 국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2) 국가실행계획 수립 시기 및 변경절차 등을 규정

라.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신설·통합)

1) 국가 실행계획 수립에 따라 지자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약칭을 변경

2)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해 지역 실행계획 관련 조문 통합

마.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 신설)

1) 위원장을 행안부장관으로 하는 등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구성 규정

2) 민간 위원 임기 및 결격사유를 규정

3) 회의 개의,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의 2 신설)

1)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구성 규정

2) 민간 위원 임기 및 결격사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안제7조의3 신설)

1)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구성

2) 지역위원회 대체 가능 위원회 규정

3) 민간 위원 임기 및 결격사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

아. 보행안전지수의 조사·공표(안 제16조 신설)

- 1) 보행안전지수의 조사항목을 규정
- 2) 보행안전지수의 산출 및 공표방법을 규정

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안 제17조 신설)

- 1)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절차를 규정
- 2)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방식, 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를 규정

차. 기타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18조)

- 1) 법률 개정으로 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제7조의2에 따른 지역 기본계획으로 변경 (안 제2조)
- 2) 시행령 조문을 통합·재배치함에 따라 조문 조정 (제8조의 2를 안 제8조로, 제16조를 안 제18조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의2”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조제5항까지를 각각 제4조제2항부터 제4조제6항까지로 하고, 제3조와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조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 현황 및 분석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4. 기관별, 연도별 추진계획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전의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의2”로 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전의 제3조제2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의 2”로 하고, “기본계획안”을 “지역계획안”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전의 제3조제3항) 중 “기본계획안”을 “지역계획안”으로 한다.

제4조제5항(중전의 제3조제4항) 중 “기본계획안”을 “지역계획안”으로 한다.

제4조제6항(중전의 제3조제5항) 중 “법 제7조”를 “제7조의2”로 하고, “기본계획안”을 전부 “지역계획안”으로 한다.

제4조를 제4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7항(중전의 제4조) 중 “(기본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제5조를 제4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8항(중전의 제5조) 중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삭제하고,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제6조를 제4조제9항으로 한다.

제4조제9항(중전의 제6조) 중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삭제하고, “제7조”를 “제7조의2”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제3조 제3항 각 호”로 한다.

제4조제9항 각 호(중전의 제6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국가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실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등은 국가실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을 제6조제2항으로, 제7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제8조를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등은 해당 연도의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지역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하며,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를 “지역실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전의 제7조제2항) 중 “실행계획”을 “지역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전의 제8조) 중 “(실행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 전문가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7조제2항제2호”는 “제7조의2제3항제2호”로 본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2.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⑤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제7조제2항제2호”는 “제7조의3제3항제2호”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보행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지수(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이행 실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종합·집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운영계획
2.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 ----- ----- ----- ----- ----- ----- ----- ----- ----- <u>법 제7조의2---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3조(<u>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u>) ① <u>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1. <u>보행자길,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 현황 및 분석</u>

	<u>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u> <u>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u> <u>4. 기관별, 연도별 추진계획</u> <u>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u> <u>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u> <u>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 <u>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	---

	<u>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u> <u>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u> <u>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u>
<u><신 설></u> <u>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기)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기본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u> <u>②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u>	<u>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u> <u>②-----제7조의2-----지역계획-----.</u> <u>③ ----- 법 제7조의2---</u>

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
역계획안-----

-----.

④ -----
지역계획안-----

-----.

⑤ -----
-----지역계획안-----

-----.

⑤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3. (생략)

제5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⑥ -----법 제7조의2-----
-----지역계획안-----

지역계획안-----

-----.

⑦ 법 제7조의2-----

-----.

1.~ 3. (현행과 같음)

⑧ 법 제7조의2-----

-----.

1.~4. (현행과 같음)

⑨ 법 제7조의2-----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u>변경하는 경우</u> <u>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u> <u>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u>	<u>2. (삭제)</u> <u>3. (삭제)</u>
<u><신 설></u>	<u>제5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국가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가실행계획</u>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실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등은 국가실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 설>	제6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u>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u>실행계획</u>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행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교통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u>장등은 해당 연도의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지역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u> ② ----- ----- ----- ----- ----- <u>법 제8조제2항-----지역실행계획</u> ----- -----. ③ ----- ----- ----- ----- ----- <u>지역실행계획</u>----- -----. ④ <u>법 제8조제2항</u>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7조(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u> <u>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u> <u>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보행안</u> <u>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u> <u>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u> <u>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u> <u>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u> <u>부장이 된다.</u> <u>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u> <u>각 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u> <u>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u> <u>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u> <u>무부차관, 행정안전부재난안</u> <u>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u> <u>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u> <u>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u> <u>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u> <u>해양수산부차관, 경찰청장.</u> <u>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u> <u>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u> <u>하는 차관으로 한다.</u> <u>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u> <u>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u> <u>민간 전문가로서 중앙위원회</u>

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③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 전문가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u><신 설></u>	제7조의2(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
---------------------------	---

	<u>부 및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u> <u>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u> <u>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7조제2항제2호”는 “제7조의2제3항제2호”로 본다.</u>
<u><신 설></u>	<u>제7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u>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2.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⑤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제7조제2항제2호”는 “제7조의3제3항제2호”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u>제8조의2</u>(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u>제8조</u>(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 ----- ----- -----. 1.·2.(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6조</u>(보행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지수(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u>이행 실태</u>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종합·집계 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 지수를 산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 정기관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 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정책연 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 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공동부 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u>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운영 계획</u> <u>2.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u> <u>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u> <u>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	---

	<u>우에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 받은 경우</u> <u>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u> <u>3. 그 밖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u>
<u>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u>	<u>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연 락 처	(044) 205 - 4217